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3나60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3나601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6 선고 2022가단503031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전수려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최영헌

변론종결 2023. 8. 29.

판결선고 2023. 12. 1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6. 선고 2022가단503031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9. 7. 1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제1심 공동피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보증재단’이라고 한다)은 피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9. 10. 30. 접수 제16590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는 C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9. 7. 24. 접수 제1085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9. 10. 17.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19. 10. 30. 접수 제233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는 C에게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19. 10. 21. 접수 제225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제1심판결 중 경기보증재단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와 2019. 10. 17.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기 전인 2019. 4. 2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H 명의의 근저당권이 제2매매계약 후인 2019. 10. 30. 말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만 구할 수 있다.

나.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을 제11호증, 갑 제7,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의 또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G이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이 법원 2020가단5062521, 2021나76561,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고 한다)에서 피고가 한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① 제2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I조합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고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위 H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는 위 근저당권이 H의 퇴직금 10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H는 C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근로자였던 사람으로 피고가 H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1. 12. 31.부터 2022. 2. 23. 사이에 6회에 걸쳐 100,000,000원을 H의 통장에 입금하였다는 거래내역서만 있는 점, ③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카단3124호로 위 H

명의 근저당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이 내려졌는데, 위 신청서에는 위 C가 위 H와 통모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위 H는 E의 직원으로서 회사에 받을 채권이 있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더구나 위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E가 아닌 피고로 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H 명의의 근저당권은 허위의 근저당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 점, 관련 민사사건은 2023. 6. 23. 확정된 점, 피고는 이 사건에서 H 명의의 근저당권의 진정성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거나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곤, 판사 손고은, 판사 이진규

별지